

첨부(1)	상계6단지 재건축판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 정정요청서]	
사업수행 능력평가 안내서	(노원구청 작성원문)	<p>7. 항목별 세부평가 기준</p> <p>가.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 【45점】 (공통분야)</p> <p>① 참여기술인(사업책임, 분야별책임, 분야별참여)는 각 1인으로 구성하며, 총3인에 대하여 평가합니다.</p> <p>② 해당 기술자격증, 학력인정서, 정밀안전진단교육(건축분야) 수료증,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후 회사 인감날인)</p> <p>③ 건축구조기술사가 사업책임 또는 분야책임기술자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불참시 실격)</p>
	협회정정 요청사항	<p>· 상기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 (공통항목) 가. 항의 ③항목은 건진법 시행규칙 [별표4]에 제시된 평가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자격 조항임으로 평가안내서에서 삭제하여야 한다,</p>
협회요청 근거	공고현황	<p>1) 노원구청은 상계6단지 재건축판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용역 사업 수행능력평가를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가 현재 나라장터에 입 찰공고된 상태임</p>
	사업수행은 능력평가 기준 (건진법 시 행규칙 별표 4)	<p>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4]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사업수행 능력 평가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르면 "입찰참가자 선정 을 위한 평가기준"에는 "참여기술인 배점범위: 45점, 평가방법: 참여 기술인의 등급.경력.실적 및 교육.훈련 등에 따라 평가" 한다고 규정 되어 있다.</p>
	1) 노원 구 청 이 제시한 평가안내서 에서 제시 한 참가자 자격검토결과 ----> 건진법을 따름	<p>2. 참가자격</p> <p>가. 공고일 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0조 제4 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야 또는 종합분야 안전진단전문 기관으로 등록된 업체</p> <p>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공단</p> <p>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p> <p>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정밀안 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참여기술자를 보유한 업체</p> <p>다. 상기 용역은 공동도급 불가</p>

노원구청이 제시한 평가 안내서에서 제시한 항목별 배점기준 검토 결과 ----> 건진법상 기술자 평가를 경력, 등급에 따라 평가토록 건립법을 준수함	다. 항목별 배점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부평가요소	배 점	
협회요청 근거	총 계			100	
	참여기술인 (45)	소 계		45	
		사업책임기술인 (18)	• 경 력		8
			• 용역수행실적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 건수)		5
	• 용역수행실적(금액)			5	
	분야별 책임기술인 (18)	• 등 급		2	
		• 경 력		6	
		• 용역수행실적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 건수)		5	
	분야별 참여기술인 (9)	• 용역수행실적(금액)		5	
		• 등 급		2	
• 경 력			3		
		• 용역수행실적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 건수)		4	
건진법 준수 여부	7. 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가.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 【45점】				
	준수	(공통분야) ① 참여기술인(사업책임, 분야별책임, 분야별참여)는 각 1인으로 구성하며, 총3인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준수	② 해당 기술자격증, 학력인정서, 정밀안전진단교육(건축분야) 수료증,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후 회사 인감날인)			
	위반	노원구는 평가안내서에 건진법 평가기준에서 근거를 찾아볼 수 평가안내서의 "2. 참가자격"에도 위배된 근거 없는 모순된 아래 외 같은 엉뚱한 조항을 삭제하여야 한다. (노원구 평가안내서 원문에 수록된 잘못된 조항 발취) ③ 건축구조기술사가 사업책임 또는 분야책임기술자로 사업수행 능력평가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불참시 실격)			
	--> 평가안내서 "2. 참가자격" 및 "항목별 참여기술자 배점기준"에도 없는 기술자 자격을 규정한 것은 근거없는 조항일 뿐만 아니라 이는 구조기술사가 없으며 참여해서는 안된다는 참여자격기준과 다름없으며, 이는 본 사업평가안내서에 제시된 "2. 참가자격"을 정면으로 어긴 조항으로서 명백한 근거없는 조항이며, 이를 공통조항에 삽입한 것은 현행 건진법 정신(학경력도 자격과 동일하게 인정한다는 현행 법제도)를 정면으로 위배한 명백한 위법조항임으로 삭제함이 마땅하다.				

첨부 1.

상계6단지아파트 재건축 판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

노 원 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안내서

1. 용역개요

- 가. 용역명 : 상계6단지아파트 재건축 추진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
- 나. 시행기관 : 노원구(도시재생과)
- 다. 용역사업의 주된 내용
 - 1) 위치

단지명	위치	건물규모				
		연면적 (동수)	구조	층수	세대수	준공년도
상계6단지 아파트	노해로 508 (상계동 720)	206,388.04㎡ (아파트 28개동)	철근콘크리트	지하1층 / 지상9~15층	2,726	1988.5.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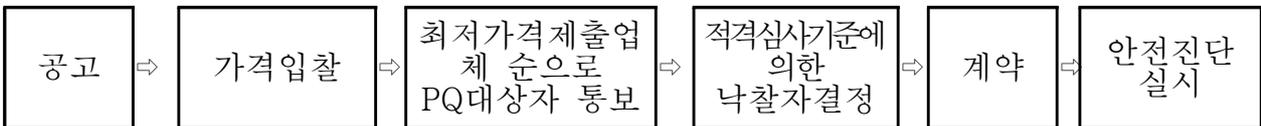
- 2) 용역범위 : 공동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과업지시서 참고)
-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 4) 용역비 : 금 307,450,000원(금 삼억칠백사십오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2. 참가자격

- 가. **공고일 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야 또는 종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
 -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공단
 -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참여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다. **상기 용역은 공동도급 불가**

3. 낙찰자 선정방법

- 가. 가격입찰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실시합니다.
- 나. 총액입찰 및 전자입찰입니다.
- 다.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라. 용역업체 선정절차



※ 적격심사 기준

- 배점한도(100점) = 용역수행능력평점(38점)+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점수(60점) + 기술인력(-10점)
- 경영상태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모두 부여함
- 지역업체참여도 미평가 대상 용역이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에 합산하여 평가함
- 용역수행능력 평가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 모두 부여함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유의사항

가. 제출일시 : 대상자에 한해 추후 통보

나. 제출장소 : 노원구청 도시재생과(본관 3층)

다. 제출서류

-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부, 사본1부) ※ 사업수행능력 평가 안내서 참고하여 작성
- 2) 사업자등록증(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 3) 인감증명서(법인 포함),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1부
- 4)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라.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및 탁송접수 불가)

마.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평가기준 포함)교부 : 국가종합조달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시

바. 평가 자료는 우리구에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안내서 및 작성지침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 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용역사업집행계획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및 제출된 모든 자료는 공고일 기준으로 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5. 평가자료 작성 시 유의사항

가. 본 평가안내서와 과업지시서에 따라 평가자료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평가자료 작성에 따른 문의사항은 노원구 도시재생과(재건축팀 담당자 정우진 TEL 02-2116-3912)로 문의

나. 모든 서류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자료는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 모든 증빙자료는 관련 관계기관에서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사본을 첨부할 경우 “원본대조필”(회사 인감날인)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라. 참여기술인의 자격과 등급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소속된 자로 하며, 경력관리수탁기관 등 관련 기관에서 발행하는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고, 타 공인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자료와 제출된 자료가 상이하거나, 필요한 서류나 실적을 위조·변조·허위 등 부정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작성한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순서에 따라 작성하되 증빙서류는 항목별로 시작페이지에 색간지를 삽입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제출된 서류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에는 실격처리

(2) 신청업체가 작성한 자기평가서와 산출근거를 첨부자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자료 해당부분에 형광펜과 일련번호 등으로 표시

사. 접수된 평가서류는 일체 반환·수정·추가하지 못하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아.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본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않는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에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질병·퇴직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자. 평가기준에서 기간의 계산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6. 평가방법

가. 평가방식

(1)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합니다.

(2) 용역수행 참가 신청업체가 작성한 평가신청서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점수는 소수점 이하 3자리에서 반올림하여 2자리까지 합니다.

다. 항목별 배점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부평가요소	배 점
총 계			100
	소 계		45
참여기술인 (45)	사업책임기술인 (18)	• 경 력	8
		• 용역수행실적(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 건수)	5
		• 용역수행실적(금액)	5
	분야별 책임기술인 (18)	• 등 급	2
		• 경 력	6
		• 용역수행실적(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 건수)	5
		• 용역수행실적(금액)	5
	분야별 참여기술인 (9)	• 등 급	2
		• 경 력	3
• 용역수행실적(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 건수)		4	
	소 계		25
유사용역 수행실적 (25)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용역금액 4,000 만원 이상)용역을 준공한 실적	• 용역수행 건수	12
		• 용역수행 금액	13
	소 계		10
신 용 도 (10)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	4
	업무정지	• 참여건설기술인	3
	재정상태 건설도	• 신용평가 등급	3
	소 계		10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개발·사용 실적	• 건설신기술, 특허	2
	투자실적	• 최근 3년간 투자실적 평균 비율	8
	소 계		10
업무중첩도 (10)	책임기술인	•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	6
	분야별 책임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		4

라. 가점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비 고
가 점	건설기술자 신규고용	0.1 ~ 0.3	

※ 단, (1)(2)항 점수합계가 100점 이상인 경우 최대 100점까지 인정합니다.

7. 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가.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 【45점】

(공통분야)

- ① 참여기술인(사업책임, 분야별책임, 분야별참여)는 각 1인으로 구성하며, 총3인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 ② 해당 기술자격증, 학력인정서, 정밀안전진단교육(건축분야) 수료증,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후 회사 인감날인)
- ③ 건축구조기술사가 사업책임 또는 분야책임기술자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불참시 실격)

--. 이조항은 위법임으로 삭제되어야 함

- ④ 내진성능평가는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 경력으로 인정하고 실적평가지에는 현장조사, 구조해석, 보수·보강방안을 모두 수행한 사항이 제시(증빙)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1) 사업책임기술자 : (18점)

(가) 자격평가

-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시 실격처리
-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교육(건축분야)를 이수한 자로 하여야 합니다.

(나) 경력(8점)

- 1)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 경력을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 2) 책임기술자에 대한 경력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3) 배점

구분	10년이상	10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점수	8.0	7.2	6.4	5.6	4.8

(다) 실적(건수) 평가(5점)

- 1) 실적인정 대상사업은 최근 7년(공고일 현재)내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용역금액 4,000만원 이상)의 실적에 한하며, 발주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또는 시행처로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행정안전부 예규 제116호(2020.6.2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을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 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 2) 참여기술자의 실적평가 시 발주청 등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해당용역에 참가한 경우 이를 해당분야 실적으로 인정.
- 3) 해당기술자에 대한 실적 중 용역명, 수행기간, 금액 또는 규모 및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수행실적만 인정.
- 4) 배점

구분	14건이상	14건미만 ~12건이상	12건미만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점수	5.0	4.5	4.0	3.5	3.0

※ 단, 0건은 0점 처리함

(라) 실적(금액) 평가(5점)

구분	7억원이상	7억원미만 ~6억원이상	6억원미만 ~5억원이상	5억원미만 ~4억원이상	4억원미만
점수	5.0	4.5	4.0	3.5	3.0

※ 단, 0원은 0점 처리함

(2) 분야별 책임기술인 : (18점)

※ 분야별 책임기술인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함.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특급·고급·중급·초급기술자이어야 함.)

(가) 자격평가(2점)

-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기준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자를 등급별로 차등 평가합니다.
-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정밀안전진단교육(건축분야)을 이수한 자로 하여야 합니다.
-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시 실격합니다.

4) 배점

분 야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건 축 분 야	2.0	1.8	1.6	1.4

(나) 경력평가(6점)

- 1)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 경력을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 2) 분야별 책임기술인에 대한 경력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확인으로 평가합니다.
- 3) 배점

구분	7년이상	7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점수	6.0	5.5	5.0	4.5	4.0

(다) 실적(건수) 평가 (5점)

- 1) 실적인정 대상사업은 최근 7년(공고일 현재)내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용역금액 4,000만원 이상)의 실적에 한하며, 발주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또는 시행처로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행정안전부 예규 제116호(2020.6.2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을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 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 2)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 시 발주청 등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해당용역에 참가한 경우 이를 해당분야 실적으로 인정.
- 3) 해당기술인에 대한 실적 중 용역명, 수행기간, 금액 또는 규모 및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수행실적만 인정.
- 4) 배점

구분	11건이상	11건미만 ~9건이상	9건미만 ~7건이상	7건미만 ~5건이상	5건미만
점수	5.0	4.5	4.0	3.5	3.0

※ 단, 0건은 0점 처리함

(라) 실적(금액) 평가(5점)

구분	5억원이상	5억원미만 ~4.5억원이상	4.5억원미만 ~4.0억원이상	4.0억원미만 ~3.5억원이상	3.5억원미만
점수	5.0	4.5	4.0	3.5	3.0

※ 단, 0원은 0점 처리함

(3) 분야별 참여기술인 : (9점)

※ 분야별 참여기술인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함.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특급·고급·중급·초급기술자 이어야 함.)

(가) 자격평가(2점)

-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기준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자를 등급별로 차등 평가합니다.
-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정밀안전진단교육(건축분야)을 이수한 자로 하여야 합니다.
-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시 실격합니다.

4) 배점

분야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건축분야	2.0	1.8	1.6	1.4

(나) 경력평가(3점)

- 1)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 경력을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 2) 분야별 참여기술자에 대한 경력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확인으로 평가합니다.
- 3) 배점

구분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점수	3.0	2.7	2.4	2.1	1.8

(다) 실적평가(4점)

- 1) 실적인정 대상사업은 최근 7년(공고일 현재)내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용역금액 4,000만원 이상)의 실적**에 한하며, 발주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또는 시행처로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행정안전부 예규 제116호(2020.6.2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을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 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 2)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 시 발주청 등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해당용역에 참가한 경우 이를 해당분야 실적으로 인정.
- 3) 해당기술인에 대한 실적 중 용역명, 수행기간, 금액 또는 규모 및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수행실적만 인정.
- 4) 배점

구분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점수	4.0	3.6	3.2	2.8	2.4

※ 단, 0건은 0점 처리함

나. 참여회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25점】

(1) 기준

(가) 유사용역사업 인정대상사업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내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용역금액 4,000만원 이상) 용역수행실적**에 한합니다.

※ 내진성능평가는 현장조사, 구조해석, 보수·보강방안을 모두 수행한 사항이 제시(증빙)된 경우에만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소속회사의 도급비율에 해당하는 실적과 금액만 인정합니다. (준공금액은 도급비율 해당금액만 기재하고 비교란에 공동도급자명, 도급비율, 총 계약금액을 기재한다.)

(2) 배점

(가) 실적건수(12점)

구분	10건이상	10건미만 ~9건이상	9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7건이상	7건미만
점수	12.0	10.8	9.6	8.4	7.2

※ 단, 0건은 0점 처리함

(나) 실적금액(13점)

구분	10억이상	10억미만 ~9억이상	9억미만 ~8억이상	8억미만 ~7억이상	7억미만
점수	13.0	11.7	10.4	9.1	7.8

※ 단, 0원은 0점 처리함

다. 신용도 【10점】

(1)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4점)

(가) 최근 1년간 (처분일 기준)수행한 용역에 대하여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에서 각 용역건수에 따라 ‘시정’ 처분은 0.3점 감점, ‘부실’ 처

분은 0.7점 감점

(2)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3점)

(가) 용역업자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나) 참여기술자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3) 재정상태(3점)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가능 합니다.

(나) 신용정보업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 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7	2.4	2.1	0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점】

(1) 개발·사용실적(2점)

(가) 개발실적은 건설기술과 관련된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고,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인정하되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합니다. 다만 특허는 최대1점까지만 인정합니다.

① 건설신기술 : 1.0점 / 건당

② 특허 : 0.6점 / 건당

- 건설신기술 및 특허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 부여

구 분	가중치				
	1.0	0.9	0.8	0.7	0.6
실적건수(건)	50이상	50미만 20이상	20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1이상
실적금액(억원)	70이상	70미만 25이상	25미만 5이상	5미만 1이상	1미만 0.5이상

※ 위 활용건수와 활용금액 중에서 한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1-1.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합니다. (한국건설신기술협회)

1-2.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한국발명진흥회)

(다) 위 (나)의 기술개발·사용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합니다.

(라) 위 (나)의 기술개발·사용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 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합니다.

(2) 투자실적(8점)

(가)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합니다.(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합니다.)

(나)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다) 해당 용역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 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구 분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점 수	8.0	7.2	6.4	5.6	4.8

마. 업무중첩도 【10점】

(1) 책임기술자(6점)

(가)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합니다.

구 분	12월미만	12월이상 15월미만	15월이상 18월미만	18월이상 21월미만	21월이상
점 수	6.0	5.4	4.8	4.2	3.6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2) 분야별 책임기술자(4점)

(가)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합니다.

구 분	12월미만	12월이상 15월미만	15월이상 18월미만	18월이상 21월미만	21월이상
점 수	4.0	3.6	3.2	2.8	2.4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8. 가점 세부평가 기준

평가 항목	세부 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자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9. 평가자료 작성요령

가.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 평가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원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다) 인감증명서(법인 포함),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1부

(라)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서류 작성 방법

(1) 페이지 수 : 제한없음

(2) 인쇄 및 제본

(가) 용지크기 : A4(210mm × 296mm)

(나) 재 질 : 백상지(80g/m²)

(다) 인쇄방법 : 공판타자, 컴퓨터 조판 인쇄

(라) 제본방법 : 무선 상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상단에 철한다.)

(마) 제본순서

- ① 사업수행능력 평가서(표지서식)
 - ② 목 차
 - ③ 정밀안전진단 용역 참여 신청서(서식1)
 - ④ 수행능력평가 참여 서약(서식2)
 - ⑤ 참여회사의 일반현황(서식3)
 - ⑥ 참여기술자 등급 및 경력 요약(서식4)
 - ⑦ 참여기술자 개인별 경력 및 실적(서식5)
 - ⑧ 유사용역 수행실적(서식6)
 - ⑨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서식7)
 - ⑩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서식8)
 - ⑪ 재정상태 건실도(서식9)
 - ⑫ 개발실적(서식10)
 - ⑬ 투자실적(서식11)
 - ⑭ 업무의 중첩도(서식12)
 - ⑮ 교육 이수 실적(서식13)
 - ⑯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서식14)
 - ⑰ 건설기술자 신규고용율 현황(서식15)
- (3)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사본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원본대조필 날인 후 회사인감을 날
 인하여야 합니다.
- (4) 기타사항
-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변조·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
 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작성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①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을
 취소합니다.
 - ②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나) 제출된 서류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
 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는 실격 처리합니다.
- (다) 관련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한 자료이어야 합니다.
-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 (마) 업체가 작성한 자기평가서 산출근거를 첨부자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
 록 첨부자료 해당부분에 노랑 형광펜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